

화해권고결정

사 건 [redacted] 공사대금

원 고 [redacted]

[redacted]

[redacted]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유 담당변호사

[redacted]

피 고 [redacted]

[redacted]

소송대리인

[redacted]

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,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.

결 정 사 항

1. 피고는 원고에게 [redacted]까지 26,000,000원을 지급한다. 만일 피고가 위 기일
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미지급 금액 및 이에 대하여 [redacted]부터 다
쑤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.

2.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.

3.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.